

# 일 반 의 안

## 심 사 보 고 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- 1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..... 1
-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..... 4
-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(재협약) 동의안 ..... 7
- 4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..... 11
- 5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..... 14

#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08. 12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08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
(08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교통과장)

-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
- 추후 인근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현 황
  - 시설명 :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
  -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-3번지(대동로타리 인근)
  - 주요시설 : 공영주차장(1,946㎡/50면), 화장실, 주차관제시스템
- 나. 위탁사무
  - 시설 : 공영주차장 토지·건물·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등
  - 운영 : 주차안내 및 지도, 주차요금 징수, 화장실 등

#### 다. 운영계획

- 위탁기간 : 2022. 10. ~ 2023. 11. 22. / 1년 1개월간  
※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 기간과 일치 후 재위탁 추진
- 선정방법 : 입찰
- 운영시간 : 09:00 ~ 18:00(연중무휴)
- 위탁시설 : 공영주차장(1,946㎡/50면), 화장실, 주차관제시스템 등

## 4. 참고사항
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주차장법」 제8조 및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
## 5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‘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’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·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“사무의 민간위탁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08. 12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08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
(08. 26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건축과장)

- 지정 게시대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선 수리, 태풍 등 풍수해 시 신속한 예방조치,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신고 유도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『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』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: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
- 나. 위탁업무
  -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, 수수료 접수
  - 현수막 설치·철거 대행
  - 게시대의 경미한 보수 및 유지관리
  - 재난·재해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장비·인력 지원

다. 위탁기간: 3년

○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
라.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

## 4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

- 광고물 관련업체의 전문성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
- 게시대 파손 및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능
- 게시대 관리업무 부담 해소

나. 관계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
- 「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19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‘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’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·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나,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과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 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

#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(재협약)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08. 12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08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
(08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농업기술센터소장)

-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「공유재산법 시행령」 제19조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함
- 재협약을 통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여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천적 교육 및 지역 과학 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현황
  - 시설명 : 거창천적생태과학관
  - 위치 : 거창읍 거함대로 3372-60, 거창사과테마파크 내
  - 규모 : 2,833㎡
    - 천적생태과학관 : 1,040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
- 천적생산 온실(비닐온실 6동 1,530㎡), 곤충체험 온실(유리온실 1동 263㎡)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  - ※ 현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
- 위 탁 금 : 200,000천원(공공운영비, 재료비, 시설비 미포함)
- 수탁기관 : (사)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(관장 1명, 직원 3명)
- 위탁사무 : 시설운영, 전시운영, 천적 생산
- 방문객 현황 ※ 2011년 개관 이래 누적 180천명 방문·체험

구 분	계	2020	2021	2022(7월기준)	비 고
방문인원(명)	18,816	6,686	8,496	3,634	코로나로 방문객 감소

- 천적공급 현황 ※ 2013년 공급 이래 1,400농가, 60,000명 공급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재협약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
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: 2022. 7.
  - 심의내용 :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, 재협약 적정성, 재산정운영비 적정성
  - 심의위원 : 6명(공무원 1명, 관련전문가 5명) 중 4명 참석
  - 심의결과
    - 업무성과평가 : 총 1,000점 만점 중 876.5점
    - 재협약적정성 : 총 100점 만점 89.8점, 원안가결
    - 재산정위탁금 : 금225,332천원, 원안가결

### 나. 관련법규

- 「공유재산법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9조
- 「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
-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8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‘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·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“사무의 민간위탁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, 동일 단체에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위탁 계약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으로 운영기간을 상시에서 특정요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임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08. 12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08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
(08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복농촌과장)

- 「거창푸드종합센터」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·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명 : 거창푸드종합센터
- 나.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-8
- 다. 주요시설 : 판매장, 선별장, 저온저장고 등 712.5㎡
- 라. 위탁대상 사무범위
  - 위탁시설 관리 운영, 농산물 순회수집, 가공, 판매
  -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,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
  - 기타 거창푸드 육성·발전을 위한 업무

마. 위탁기간 : 2022. 12. 24. ~ 2025. 12. 23.(3년간)

바. 선정대상 :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푸드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사.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
#### 4. 참고사항

- 「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
##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‘거창푸드종합센터’의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·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, 위탁 대상 시설이 거창읍 거함대로 3372-8으로만 되어 있어, 최근 오픈한 2호점의 경우 신규 위탁 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

- 민간위탁 대상자 공고시 거창푸드 종합센터 1호점과 2호점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공고하시기 바람

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 
대행기관 선정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08. 12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08. 1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
(08. 26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복농촌과장)

- 「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」(구. 학교급식지원센터)의 식재료 조달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조달 대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운영 개요
  - 위 치 : 거창읍 거함대로 3372-30
  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4,017㎡ / 건축면적 1,119㎡
    - (1층) 입하장, 공산품보관실, 예냉실, 소분실, 출하대기실, 출하장 등
    - (2층) 사무실, 회의실, 전산실 등
  - 사업내용
    - 식자재 조달 대행(품목, 업체 결정 등)



- 학교별 식자재 매칭작업 및 클레임 관리,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확대
  -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, 매월 운영실적 결과보고 등
  - 예산지원 : 없음, 식자재 조달수수료(10~15%)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
- 나. 위탁기간 및 선정기준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간)
  - 선정대상 :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  - 선정방법 : 공모(협상에 의한 계약)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

#### 4. 참고사항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, 동 시행령 제19조
-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, 제12조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5조, 제9조

##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‘먹거리통합지원센터’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위·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